

대전지방법원 2024. 10. 31 선고 2024가단2590 판결 [건물명도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9. 26.

판결 선고2024. 10. 3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, ②, ③, ④,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C호
부분 20m²를 인도하고,
나. 1,67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6. 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
지급하고,
다. 2024. 3. 1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334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
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하세용

별지